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본점 환급

1. 「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추진」(세무2과-19003, 2016.5.27.)과 관련
입니다.

2. 지방세법 제103조의62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】 및
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본점환급을
처리하고자 합니다.

가. 환급대상 : *~*~*~* 외 5,608개 법인

나. 건수 및 세액 : 5,609건 금23,398,569,870원
(금이백삼십삼억구천팔백오십육만구천팔백칠십원)

붙임 본점환급내역서 1부. 끝.

주무관	배진열	지방소득세1팀	이덕배	세입관리팀장	이정현	기획경제국장	전결 06/01
		장					김용운

협조자